

2026년 제2차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 교부 신청 안내

2026. 9.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문화예술교육사
Art & Culture Education Instructor

2026년 제2차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 교부 신청 안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26년 제2차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 교부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자격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구분	자격 요건		
	학력 요건	교육과정 이수 요건	
가. 예술 관련 전공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직무역량	예술전문성
		· 2급 신 교육과정 5과목 (현행 교육과정) - 문화예술교육 개론 -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교육론, 교수 학습방법, 교육프로그램 개발) -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 (10과목 30학점 이상 이수)
나. 고등학교 졸업자, 비전공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마. 국가무형 유산 이수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마목은 2026. 7. 23. 이내 국가무형유산 이수증 보유자 신청 가능

※ 구 교육과정(개정 전 교육과정/대체 교과목)은 2016년 3월 2일 이전 입학하여 2021년 3월 31일까지 모든 교육과정 이수를 완료했을 경우 인정

- ①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를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은 해외학위 취득자, 부전공·복수전공자를 포함하며, 예술 관련 분야별 최저 이수 학점(30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함
- ② 문화예술교육사의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교육가로서의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예술 분야 전공과목 중 실기 위주의 교과 이수 여부를 심사

2 신청 개요

□ 신청 기간

- 2026. 9. 7.(월) 10:00 ~ 9. 18.(금) 16:00까지 ※ 마감 이후 접수 불가

□ 신청 방법

- 문화예술교육사 누리집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 문화예술교육사 누리집: [로그인] → [자격신청] → [2급 자격신청]
 - 온라인 신청 시 **PC로만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휴대폰 등) 신청 불가
- ※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 권장(Mac 운영체제 사용시 전산 오류 발생 가능성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간주함)
- ※ 신청 접수 완료 후 수정(제출서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간 내 취소 후 재신청 할 수 있음

□ 신청 수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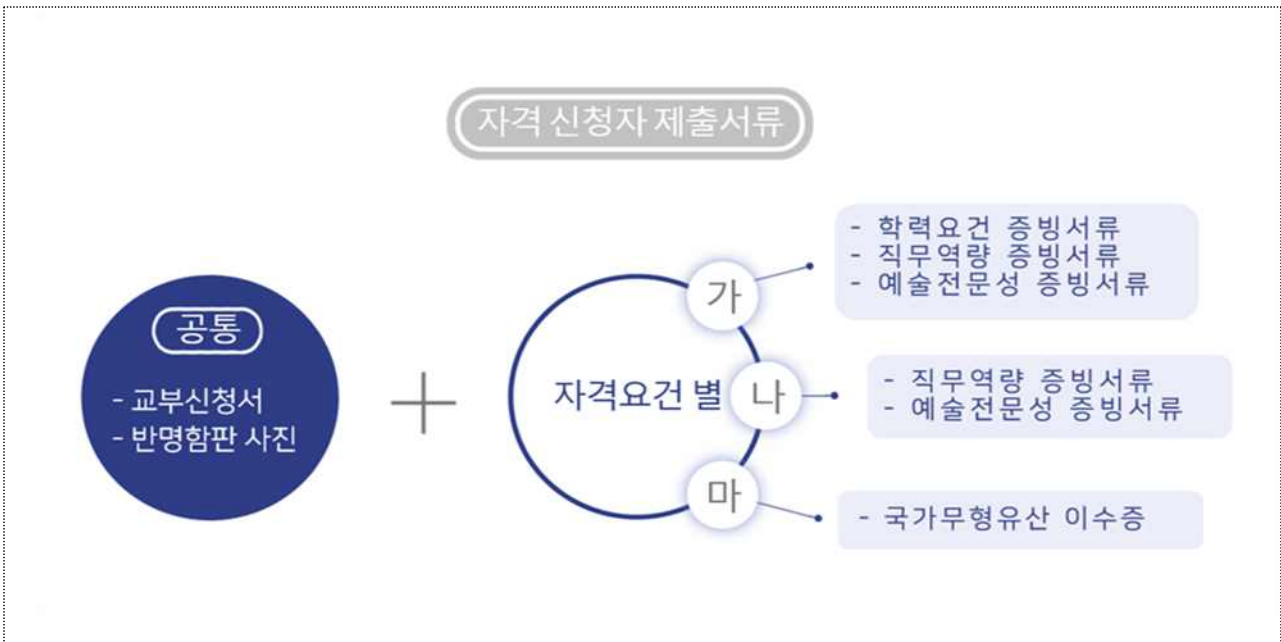
- 수수료: 1만원
- 결제 방법: 온라인 결제 ※ 신용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 결제 시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 신청 시 결제 진행
 - ※ 결제가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 완료되며, 신청 기간 내 신청 취소 시 수수료 반환됨

□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증빙 서류 미제출, 정보 오기재, 자격 분야 및 신·구 교육과정 오기재, 서류 잠금 처리, 정보 식별 불가(영문본 제출), 개인 정보 임의 삭제 등으로 인한 자격교부 미충족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간주함
- 신청자 접속 과다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 기간 종료 이전에 신청할 것**을 권장함. 접수 완료 후, 신청 기간 내 신청자가 직접 [마이페이지] 통하여 정상적인 증빙 서류 첨부 여부 확인 가능
- 온라인으로 제출한 증빙 서류의 원본 진위여부 확인이 안 될 경우(예: 문서화인번호 미기재, 오류, 유효기간 만료 등), **심사에서 탈락**되므로 신청자 직접 사전 확인 필요 ※ 원본 확인 방법 P.12 참고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신청 시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예: 주소, 연락처, 비밀번호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로그인 후 변경 가능** ※ 누리집: arte.or.kr

3 제출서류

□ 한 눈에 보는 제출서류



□ 신청자 공통 사항

1. 교부 신청서(온라인)

2.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반명함판 사진(3cm×4cm)

- 첨부사진은 이미지 파일(GIP, JPG, JPEG, PNG)만 등록 가능
- 교부 신청서의 첨부 사진은 자격증 제작에 활용되므로 반드시 규격 준수

□ 자격요건 별 제출 서류 안내

※ 신청자별 자격 요건 및 이수 내역에 맞는 제출 증빙서류 제출

가. 예술 관련 전공자(예술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

1. [학력 요건] 증빙서류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공통사항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미인정 서류: 졸업예정증명서, 학위증서, 재학증명서 - 학점은행제 통해 학위 수여 받은 경우, 교육부 장관 명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 대학 등의 장(총장)명의 등 발급된 학위수여증명서 제출	※ 온라인 제출 시, 서류 원본 확인 위한 문서확인번호(진위여부코드) 포함 필수 *세부내용 p. 12 참고

2. [교육과정] 이수 요건 증빙서류

1) 직무역량

- 학교명, 개설학과 명, 교과목명, 이수시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 자료로, **아래 중 해당되는 서류 제출**

※ 교육과정 이수 성적 F인 경우 미인정

제출 서류 및 유의 사항		(필요시) ★보완서류
[성적 증명서] - 식별 가능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 기재 필수 ※ 온라인 제출 시, 서류 원본 확인 위한 문서확인번호(진위여부코드) 포함 필수 *세부 내용 p. 12 참고 ※ 교육과정 적합여부 심의에 따른 교과목 인정 시기부터 이수한 교과목만 인정(예시: OO 대학교 OO 학과에서 개설한 문화예술교육개론의 개설 시기가 2019년 1학기 인 경우, 2019년 1학기부터 수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동일 교과목 명이어도 2018년 2학기 이수한 경우는 미인정) ※ 적합여부 심의에 따라 최종 인정받은 교육과정(누리집 확인 가능)이 아닌, <u>교과목 명의 단순 동일성, 내용적 유사성이 있는 교육과정 이수한 경우는 미인정</u> - 학점은행제로 직무역량 교과목 이수한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제출 필요 ※ 인정 교육과정 이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성적증명서에 학교명/해당 학과명/교과목명/이수시기 기재 필요. 인정 교육과정과 신청자의 성적 증명서 내 이수 교과목 비교하여 검토·심사될 예정이며, 인정 교육과정은 [누리집] →[교육과정]→[인정 교육과정]에서 확인 가능. 자세한 방법은 신청접수 FAQ 참고)	⇒	타과이수 확인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지정교육기관)] - 식별 가능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 및 수료번호 필수 - 이수증 혹은 이수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 이수과목, 인적사항 등 오기재 시 미인정되므로 제출 전 확인 필요 ※ 문서확인번호(진위여부코드) 불필요		
[시간제 등록생 성적 증명서] - 식별 가능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 기재 필수 ※ 시간제 등록생으로 OO사이버 대학에서 직무역량을 이수한 경우, <u>해당 교육기관 (예: OO사이버 대학)에서 발급한 시간제 성적증명서 제출</u>(인정 교육과정 이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증빙 서류에 학교명/해당학과명/교과목명/이수시기 기재 필요. 인정 교육과정과 신청자의 성적 증명서 이수 내용 비교하여 검토·심사될 예정이며, 인정 교육과정은 [누리집] →[교육과정]→[인정 교육과정]에서 확인 가능) ※ 온라인 제출 시, 서류 원본 확인 위한 문서확인번호(진위여부코드) 포함 필수 *세부 내용 p. 12 참고	⇒	「시간제 등록생 성적 증명서」 확인서

[★보완서류 안내]

1. 타과이수확인서

- 본인이 졸업한 학과 외, 타과에서 개설 및 인정된 직무역량 교과목 이수한 경우
- 학과 명칭이 변경되어, 문화예술교육사 누리집에서 검색되는 학과명과 성적증명서 내 학과명이 상이할 경우
- 신청자는 대학원 소속(석사 과정 등)이나, 본교 학부에서 개설되어 인정받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등

(양식 샘플)

타과이수확인서

성명 :
 생년월일 :
 학과명 : ※ 해당 학과 졸업 학과(A)
 학번 :

과목명	이수학기	학점	성적	개설학과

위 학생은 ○○○ 대학교의 해당 교과목을
 타과 개설(학과) 교과목으로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00.00.00

00대학교 학과장 성함 (인) ※ 직인 날인 필수

(예시)

- ①: 피아노 전공 졸업생이나, 관현악과에서 개설하여 인정받은 '음악 교육론' 이수
- ②: ○○대학원생이나, ○○대학교(학부)에서 개설하여 인정받은 '문화예술교육개론' 이수

※ 신청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학과, 학번), 이수 내용(과목명, 이수학기, 학점, 성적, 개설학과), 해당 학과 또는 학과장 직인 필요하며 해당 정보 누락 시 심사 제외

※ 양식 출처: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자료실 → 타과이수확인서 검색

2. 「시간제 등록생 성적 증명서」확인서

- 시간제 등록생 성적증명서 상에 교육과정 개설 학과명이 미기재된 경우

(양식 샘플)

「시간제 등록생 성적 증명서」확인서

※ 시간제 등록생 성적증명서 상에 이수한 교과명이 미기재된 경우 본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 취득 필수 시 시간제 등록생 성적증명서(1부)와 시간제 등록생 성적 증명서 확인서(1부) 등 2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미기재된 학과명(문구)은 학과명 시 실고 후 양식을 제출합니다.

성명 :
 생년월일 :
 학과명 :
 학과명 : ※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학과
 학번 :

과목명	이수학기	학점	성적	개설학과

위 학생은 ○○○ 대학교의 해당 교과목을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학과 학과) 에서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00년 0월 00일

00대학교 학과장 성함 (인) ※ 직인 날인 필수

※ 양식 출처: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자료실 → 「시간제 등록생 성적 증명서」확인서

2) 예술전문성

-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 운영 세부 규칙 제8조(심사기준)에 따라, 아래 중 해당되는 서류 제출 ※ 이수 성적 F인 경우 미인정

제출 서류 및 유의 사항
[성적 증명서] - 식별 가능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 기재 필수 - 학점은행제로 예술전문성 교과목 이수한 경우, <u>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성적증명서 제출</u> ※ 온라인 제출 시, 서류 원본 확인 위한 문서확인번호(진위여부코드) 포함 필수 *세부내용 p. 12 참고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 (지정교육기관)] - 식별 가능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 수료번호 기재 필수 - 이수증 혹은 이수증명서 인정 불가 ※ 발급받은 수료증 내 인적사항, 이수과목 등 정보 오기재 시 미인정되므로 제출 전 사전 확인 필요 ※ 문서확인번호(진위여부코드)불필요
[시간제 등록생 성적 증명서] - 식별 가능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 기재 필수 - 시간제 등록으로 예술전문성 교과목 일부를 추가로 이수한 경우, <u>교육기관 발급 성적 증명서 제출</u> ※ 온라인 제출 시, 서류 원본 확인 위한 문서확인번호(진위여부코드) 포함 필수 *세부내용 p. 12 참고

- 예술 관련 분야 전공생이나 편입자, 복수전공자, 대학원 졸업자, 해외 학위 취득자는 직무역량 5과목, 예술전문성 (자격 분야 전공 10과목, 30학점 이상) 관련 증빙자료 모두 제출

구분	유의사항
편입자	- 편입 전·후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대학원 졸업자	- 대학(학부)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추가 제출
해외 학위 취득자	- 교부신청서(범죄경력조회 동의 포함)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 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 및 번역 공증 원본 - 출입국 증명서 ※ 해외 체류를 수반하지 않는 온라인 해외 학위 취득자의 경우, 해당 학위 과정이 온라인(혹은 원격) 과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예시: 졸업증명서 내 '온라인 과정 표시' 여부 자료, 해당 학교 홈페이지 안내 자료(온라인 프로그램 안내 *학위 프로그램 운영 시기 포함), 학교에서 정식 발급된 확인서 등 - 직무역량 교육과정 이수 증빙 서류

□ 나. 고등학교 졸업자, 비 전공자

1. [학력 요건] 증빙 서류

- 제적 증명서(제적에 해당 시 제출)

※ 예술 전공 재학생 혹은 휴학생의 경우 '나' 요건 신청 불가하며, 졸업 및 예술 분야 학위 취득 이후 '가' 요건으로 신청 가능

※ 예술 관련 분야 학위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가' 요건 신청 필요(편입, 복수전공, 부전공, 석사 학위 경우 모두 포함)

2. [교육과정] 이수 요건 증빙자료

1) 직무역량

- 학교명, 개설학과명, 교과목명, 이수시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 자료로, 아래 중 해당되는 서류 제출

※ 교육과정 이수 성적 F인 경우 미인정

제출 서류 및 유의 사항	(필요시) ★보완서류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 (지정교육기관)] - 식별 가능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 기재 필수 - 이수증 혹은 이수증명서 인정 불가 ※ 이수과목, 인적사항 등 정보 오기재 시 미인정되므로 제출 전 사전 확인 필요 ※ 문서확인번호(진위여부코드)불필요	
[성적 증명서] - 식별 가능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 기재 필수 - 학점은행제로 직무역량 교과목 이수한 경우,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제출 필요(인정 교육과정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성적 증명서에 학교명/해당학과 명/교과목 명/이수시기 기재 필요. 인정 교육과정과 신청자의 성적 증명서 이수 내용 비교하여 검토·심사될 예정이며, 인정 교육과정은 [누리집] →[교육과정]→[인정 교육과정]에서 확인 가능) ※ 온라인 제출 시, 서류 원본 확인 위한 문서확인번호(진위여부코드) 포함 필수 * 세부 내용 p. 12 참고	⇒ 타과이수 확인서
[시간제 등록생 성적 증명서] - 식별 가능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 기재 필수 - 시간제 등록생으로 OO사이버 대학에서 직무역량을 이수한 경우, 해당 교육기관(예:OO 사이버대)에서 발급한 시간제 성적 증명서 제출 (인정 교육과정 이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성적 증명서에 학교 명/해당학과 명/교과목 명/이수시기 기재 필요. 인정 교육과정과 신청자의 성적 증명서 이수 내용 비교하여 검토·심사될 예정이며, 인정 교육과정은 [누리집] →[교육과정]→[인정 교육과정]에서 확인 가능) ※ 온라인 제출 시, 서류 원본 확인 위한 문서확인번호(진위여부코드) 포함 필수 * 세부 내용 p. 12 참고	⇒ 「시간제 등록생 성적 증명서」 확인서

[★보완서류 안내]

1. 타과이수확인서

- 본인이 졸업한 학과 외, 타과에서 개설 및 인정된 직무역량 교과목 이수한 경우
- 학과 명칭이 변경되어, 문화예술교육사 누리집에서 검색되는 학과명과 성적증명서 내 학과명이 상이할 경우
- 신청자는 대학원 소속(석사 과정 등)이나, 본교 학부에서 개설되어 인정받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등

(양식 샘플)

타과이수확인서

성명 :
 생년월일 :
 학과명 : ※ 해당 학과 졸업 학과(A)
 학번 :

과목명	이수학기	학점	성적	개설학과

위 학생은 ○○○ 대학교의 해당 교과목을
 타과 개설(학과) 교과목으로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00.00.00

00대학교 ○○학과장 성함 (인) ※ 직인 날인 필수

(예시)

- ①: 피아노 전공 졸업생이나, 관현악과에서 개설하여 인정받은 '음악 교육론' 이수
- ②: 아르떼 대학원생이나, 아르떼 대학교(학부)에서 개설하여 인정받은 '문화예술교육개론' 이수

※ 신청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학과, 학번), 이수 내용(과목명, 이수학기, 학점, 성적, 개설학과), 해당 학과 또는 학과장 직인 필요하며 해당 정보 누락 시 심사 제외

※ 양식 출처: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자료실 → 타과이수확인서 검색

2. 「시간제 등록생 성적 증명서」확인서

- 시간제 등록생 성적증명서 상에 교육과정 개설 학과명이 미기재된 경우

(양식 샘플)

「시간제 등록생 성적 증명서」확인서

※ 시간제 등록생 성적증명서 상에 이수한 교과목이 미기재된 경우 본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 취득 필수 시 시간제 등록생 성적증명서(1부)와 시간제 등록생 성적 증명서 확인서(1부) 등 2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미기재된 학과명(문구)은 학과명 사 실고 후 실적을 제출합니다.

성명 :
 생년월일 :
 학과명 :
 학과명 : ※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학과
 학번 :

과목명	이수학기	학점	성적	개설학과

위 학생은 ○○○ 대학교의 해당 교과목을
 (교과목을 이수한 학과 학과) 에서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00년 0월 00일

00대학교 ○○학과장 성함 (인) ※ 직인 날인 필수

※ 양식 출처: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자료실 → 「시간제 등록생 성적 증명서」확인서

2) 예술전문성

-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 운영 세부 규칙 제8조(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되는 예술전문성 학점 인정을 증빙하는 서류 등 ※ 이수 성적 F인 경우 미인정

제출 서류 및 유의 사항
[성적 증명서] - 식별 가능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 기재 필수 - 학점은행제로 예술전문성 교과목 이수한 경우, <u>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성적증명서 제출</u> ※ 온라인 제출 시, 서류 원본 확인 위한 문서확인번호(진위여부코드) 포함 필수 *세부내용 p. 12 참고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 (지정교육기관)] - 식별 가능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 수료번호 기재 필수 - 이수증 혹은 이수증명서 인정 불가 ※ 발급받은 수료증 내 인적사항, 이수과목 등 정보 오기재 시 미인정되므로 제출 전 사전 확인 필요 ※ 문서확인번호(진위여부코드)불필요
[시간제 등록생 성적 증명서] - 식별 가능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 기재 필수 - 시간제 등록으로 예술전문성 교과목 일부를 추가로 이수한 경우, <u>교육기관 발급 성적 증명서 제출</u> ※ 온라인 제출 시, 서류 원본 확인 위한 문서확인번호(진위여부코드) 포함 필수 *세부내용 p. 12 참고

☐ 마.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1. 국가무형유산 이수증

- 이수증 첨부 필요

4

신청 및 서류 제출 방법

□ 신청 방법: 문화예술교육사 누리집 [온라인 신청\(acei.arte.or.kr\)](http://acei.arte.or.kr)

□ 증빙서류 제출 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등기) 제출 중 택 1

① 제출 서류의 원본 확인 가능할 경우(파일 내 문서확인번호(진위여부코드) 기재된 경우) → 온라인 제출

구분	세부 내용
신청방법	○ 교부 신청서(온라인) 작성
증빙서류 제출방법	○ 모든 증빙서류 온라인 파일 첨부 ※ 우편 증빙제출은 불필요하며, 온라인으로 제출된 증빙자료만 심사 진행
유의 사항	○ 학력요건 증빙자료(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심사종료일 기준 최소 3개월 이내 발급본(2026. 7. 15. 이후) 문서 제출 ○ 진위여부코드 식별 불가 시, 심사에서 제외되므로 제출 전 직접 확인 필요 ○ 모든 증명서 내 정보(개인정보, 학과명, 학점, 이수시기, 학수구분, 교과목명 등) 확인 및 심사가 가능하도록 고화질 스캔본(PDF, JPEG 등) 첨부 ※ 이의신청 절차 시(해당되는 경우) 추가 서류 첨부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 권장(Mac 운영체제 사용 시 전산 오류 발생 가능성 있음)

② 제출 서류의 원본 확인 불가능할 경우

- 자동발급기 발급문서, 주민센터 발급문서로 문서확인번호(진위여부코드)가 없는 경우, QR코드만 기재된 경우 등

→ 우편(등기) 제출

구분	세부 내용
신청방법	○ 교부 신청서(온라인) 작성 및 인쇄 후 우편(등기) 제출
증빙서류 제출방법	○ 모든 증빙서류 우편 제출 필수 ※ 온라인 증빙제출은 불필요하며, 우편 제출 증빙자료로만 심사 진행 ○ 필수 제출 서류: 학력 요건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교육과정 요건 증빙자료(성적 증명서 등) ○ 우편 서류 접수 확인 방법: 문화예술교육사 누리집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자격신청현황]
유의 사항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심사종료일 기준 최소 3개월 이내 발급본(2026. 7. 15. 이후) 원본 문서 제출 ○ 반드시 등기우편 제출(방문 제출, 퀵 서비스 제출 시 심사 제외) ○ 2026. 9. 21.(월)까지 우편소인분(접수일자)만 인정 ※ 심사 종료 후 해외 학위 취득자만 제출 서류가 반환되며, 그 외 반환 불가 ○ 우편 제출처 (우 039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상암동, YTN 뉴스퀘어) 11층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예교육사운영팀 앞

※ 제출 서류 원본 확인 방법

문서확인 번호 포함 →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문서확인번호(진위여부코드) 및 원본 확인 가능 사이트가 기재되어 있어, 온라인으로 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 ※ 문서확인번호 또는 Internet no 둘 중 하나만 기재 - 문서확인번호(예시) XD15-DF-CF56-ACEF - Internet no(예시) 3156498153489 ※ 증명서 내 '제2025-000000-1호' 등으로 표기되는 서류 고유 번호는 원본 진위여부를 위한 문서확인번호가 아니므로 유의 필요  문서확인번호: XD15-DF-CF56-ACEF 졸업 증명서 성명: 홍길동 전공학과: @@@과 복수전공: □□□과 발급일자: 00.00.00. 입학일자: 00.00.00. 학위번호: 0000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A 대학교 교학처장 Internet no 3156498153489 문서확인번호(진위여부코드) 발급 및 원본 확인 대학 - '웹민원센터', '씨트피아' 기준 전국 약407개 대학 발급 가능 - 학교별 자체적으로 문서확인번호(진위여부코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자가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증빙서류 제출 방법 선택 ※ 문서확인번호 유효기간 유의하여 발급 및 제출 (2026. 7. 15. 이후 발급하는 등 자격교부 심사 기간 내 문서확인번호가 유효해야 인정)
문서확인 번호 미포함 → 증빙 서류 우편(등기) 제출	문서확인번호(진위여부 코드)가 없는 경우 - 예시: 자동발급기 발급문서, 주민센터 발급 문서, QR코드만 기재된 경우

☐ 참고 사항: 예술전문성 교차 인정

- 예술전문성 심사 시 **시각예술 영역**(미술,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의 경우 **9학점 이내의 타 시각예술 분야 교과목** 이수를, **공연예술 영역**(음악, 국악, 무용, 연극)의 경우 **9학점 이내의 타 공연예술 분야 교과목** 이수를 인정
※ 영화 분야 미해당

☐ 최종 자격 심의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교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최종 자격 취득 여부 결정**

5 향후 주요 일정(안)

☐ 자격교부 심사기간: 2026. 9. 21.[월] ~ 10. 15.[목]

☐ 결과발표: 2026. 10. 23.[금]

- 자격 취득자는 결과발표 후 문화예술교육사 누리집에서 온라인 자격증 발급 가능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자격증발급] → [온라인 자격증 발급] 내 [인쇄] 버튼 클릭

☐ 이의신청 접수기간: 2026. 10. 26.[월] ~ 10. 30.[금]

- 정규심사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의신청 가능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증빙서류 미제출, 정보 오기재, 서류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인한 미충족의 경우,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 자격증 배송: 2026. 12월 이내

- 자격증 배송 방식·주소는 자격교부 신청 완료 후 변경 불가
- 자격증 우편 배송 시기(12월 예정)를 고려하여 수령방법, 배송주소 입력 필요
 - 등기발송으로 수령자 부재 또는 주소 불일치로 인한 반송이 없도록 유의
 - 직접 수령 선택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서울 마포구) 1층 도착 후 상담센터(070-7825-1460) 연락하여 자격증 수령

6 문의처

☐ 문화예술교육사 상담센터: ☎ 070-7825-1460

- 상담시간: 평일 9:00~18:00, 점심 휴식시간 12:00~13:00 제외
- 문화예술교육사 누리집 고객센터 1:1 문의 게시판 이용

[참고] 관련 법령

(참고)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 운영 세부 규칙 제8조 (심사기준)

②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예술전문성 학점 인정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조 3호 제외),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점 이수 후,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지정 교육 기관에서 이수한 학점